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2공구)]

- 점검일시 : 2021.06.15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마들로 도로 및 보도 공사장 기준, 신설 맨홀 전 수조사 하여 뚜껑이 미설치된 개소는 추락주의 표식을 부착하여 임시 덮개를 설치하고 고정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17단지 보도 공사장 맨홀 중 인상 작업이 안 되어 발빠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는 임시 지주 등을 세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
- 마들로 도로 현장 관로공사 구간에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동식 가설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후 작업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마들로 공사현장 굴착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요망

- ① 굴착기 안전핀 체결
  - ② 도로주행 및 작업 중 안전벨트 체결하고 안전화 착용
  - ③ 모든 운행 시 부득이 작업사항 확인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출입문 닫음 상태 유지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2 건설기계 안전-001(건설기계), 007(굴착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작업종료 및 중단 시 가스용기가 충돌위험이 높은 도로 인근에 절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, 구내운반차나 공사장에 사용하지 않는 가스용접기는 용접기를 분리하여 가스용기는 위험물 보관함에 관리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(위험물 등의 보관), 제234조(가스등의 용기)





○ 보건 관리(토목부)

- 마들로 도로 및 보도 공사장, 건축관리동 외부 작업을 우선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체온저하로 인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/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마들로 도로 및 보도 포장공사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이 주변과 공사구간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 방치하고 작업할 경우 포장품질 저하, 지반함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제거한 후 시행 요망
- 17단지 보도구간에 기존 맨홀 파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원인자가 본 현장에 해당되는 모든 맨홀은 철저히 보수 및 보강 후 포장공사 요망
- 마들로 도로 및 보도 포장공사 구간에 우천으로 물이 고인 개소는 다짐도 확보를 위해 건조 후 최대한 바닥에 떠오른 부유토를 제거하고 골재 포설 및 다짐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마들로, 건축관리동의 도로와 보도, 주차장 포장공사 시행에서 우천 시 다짐공사를 할 경우 최적함수비를 유지하기 힘들고, 상대적으로 연약한 부유토가 표층으로 배출된 상태로 습윤 측 다짐이 되어 소요다짐도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양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건축관리동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사용하지 않는 호스는 전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리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건축관리동은 1층이 사용승인 되어 입주한 상태로 건물 내부에서는 흡연을 못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화재예방을 위해 건물 내 모든 재떨이는 모두 반출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(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)

